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623
----------	-----

2023. 04. 27.
주택공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23. 3. 29. 유정인 의원 발의 (2023. 4. 3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의 상위법령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도 달라진 바,
-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

- 조항 변경: 안 제10조제1항, 제34조제6호, 제35조, 제38조제1항제3호, 별지 제6호 서식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오정균)

-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 일부 근거조항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상 근거조문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조문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<개정 내용>

조례 조문	현 행	개정안	비 고
제10조 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	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	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	도시정비법 개정 ('21.4.3.) - 제7호 추가
제34조 (관리처분계획의 내용)	법 제74조제2항제1호	법 제74조제4항제1호	도시정비법 개정 ('21.3.16.)
제35조 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	법 제74조제2항제2호	법 제74조제4항제2호	
제38조 (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)	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 목	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 목	도시정비법 개정 ('22.2.3.)
[별지 제6호 서식] 금품·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4조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2조	도시정비법 근거조항 정정

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	02-2180-8204
입 법 조 사 관 최지현	02-2180-8216

[붙임] 개정안의 주요내용(p.3)

■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제623호)

연번	조례	주요 내용
1	제10조 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	<p>(개정 사유) '21.4.13. 도시정비법 개정(제7호 추가)</p> <p>(현행) - 제10조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(개정) → 제10조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대하여 ~(중략)~ 받아야 한다.</p> <p>※법 제14조제1항제7호: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</p>
2	제34조 (관리처분계획의 내용) 제35조 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	<p>(개정 사유) '21.3.16 도시정비법 개정 (74조제2항1호 → 제4항1호)</p> <p>(현행) - 제34조 6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·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며,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.</p> <p>- 제35조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·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(개정) → 제34조 6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·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,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.</p> <p>→ 제35조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·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
3	제38조 (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)	<p>(개정 사유) '22.2.3 도시정비법 개정 (종전 다목 →개정 리목)</p> <p>(현행) - 제38조 3.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~(중략)~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</p> <p>(개정) → 제38조 3. 법 제76조제1항제7호리목에 따라 ~(중략)~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</p>
4	[별지 제6호 서식] 금품·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	<p>(개정 사유) 법 근거 조항 반영(법 142조)</p> <p>(현행) - [별지 제6호 서식]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4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9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>(개정) → [별지 제6호 서식]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2조 및 (후략)</p>